



하 남 경 찰 서

수신자 유예림 귀하 (우 12959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87번길 41 2층)
(경유)

제 목 정보 (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) 결정 통지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 11366847	접수일 2023. 10. 17.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2023년10월13일 21:11분 건대건 개물림 사고로 경찰에 신고접수 한 거에 대한 출동한 경찰관 성함과 연락처 소속지구대 정보와 가해자 연락처 정보공개 요청합니다.
-------	---

공개 내용	2023. 10. 13.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개물림 사고로 신고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은 하남지구대 경위 주동인, 경장 김태승입니다.
-------	--

공개 일시	2023. 10. 19. 20	공개 장소	
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
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개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·시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·출력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자파일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제·인화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-------	---

수령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전송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망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 등
-------	---

납부 금액	① 수수료	② 우송료	③ 수수료 감면액	계(①+②-③)
	0원	0원	0원	0원
	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	[]
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비공개외 (전부 또는 일부) 근거 조항	개인사생활 침해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비공개 근거 조항 :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귀하께서 요구하신 정보 중 타인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

	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해 비공개하며,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하남경찰서장

경장 박재수 112관리팀장 방진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성호

협조자

시행 112치안종합상황실-5499(2023. 10. 19.)

우 13024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 경기하남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

전화번호 031-790-0242 팩스번호 02-- / jaesuo0828@police.go.kr / 공개 구분

인쇄일자 : 2023. 10. 26. 18:19:32

인쇄자 : 유예림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2/3

유의 사항

-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-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-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-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